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19. 6. 25.

사회건설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가. 발의일자 : 2019년 6월 5일

나. 발 의 자 : 박미영 의원 외 4명

다. 회부일자 : 2019년 6월 11일

라. 상정일자 : 제214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2019년도 제1차 정례회
제5차 사회건설위원회(2019. 6. 19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박미영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에게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건전한 경제주체로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37조)
- 청소년 노동인권보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38조)
-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39조)
-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·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40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이정옥)

- 본 건은 청소년의 노동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
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.
- 주요 내용은
 - 안 제37조에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에 관한 사항
 - 안 제38조에 청소년 노동인권보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
 - 안 제39조에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에 관한 사항
 - 안 제40조에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·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각각 신설하였음.
- 근로 청소년의 대부분은 파트타임 등의 비정규직 형태로 근무하고 있으며,
열악한 노동환경에서 다양한 형태의 권익 침해와 부당한 차별을 겪는 경우
가 존재하고 있음. 따라서,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8조제2항에 따라 근로 청
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반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현실 여건을 감안
할 때 본 조례안의 입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
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(박미영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26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9년 6월 일

발의자 : 박미영 의원 외 4명

1. 제안이유

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, 청소년에게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건전한 경제주체로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37조)
- 나. 청소년 노동인권보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38조)
- 다. 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39조)
- 라.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·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40조)

3. 개정안 : “별첨”

4. 참고사항

- 가. 관련근거 : 「청소년 기본법」, 「청소년 보호법」
- 나. 예산조치 : 예산조치 필요 없음

다. 입법예고(2019. 5.31. ~ 6. 5.) : 의견 없음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장의 제목 “청소년통행금지·제한구역 지정 운영”을 “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”으로 한다.

제37조부터 제44조까지 및 제45조부터 제52조까지를 각각 제41조부터 제48조까지 및 제49조부터 제56조까지로 하고,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7조(청소년 노동인권 사업)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
2.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·실태조사
3.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및 홍보
4. 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
5.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, 상담원 양성 및 구제 체계 구축
6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38조(청소년 노동인권보호단 구성 및 운영) ① 구청장은 청소년 근로권익보호 및 개선을 위한 구 청소년 노동인권보호단을 구성·운영할 수

있다.

②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상담 및 신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.

제39조(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)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사업장을 선정·홍보할 수 있다.

제40조(사업의 지원)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41조 앞에 “제8장 청소년통행금지·제한구역 지정 운영”을 삽입한다.

제45조 앞에 “제8장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”을 삭제한다.

제49조 앞에 “제9장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”을 삽입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7장 <u>청소년통행금지·제한구역</u> <u>지정 운영</u> <u><신 설></u>	제7장 <u>청소년 노동인권 보호</u> <u>및 증진</u> 제37조(청소년 노동인권 사업) 구 창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 1.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2.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·실태 조사 3.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및 홍 보 4. 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 5.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, 상담 원 양성 및 구제 체계 구축 6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 다 고 인정하는 사업 제38조(청소년 노동인권보호단 구 성 및 운영) ① 구청장은 청 소년 근로 권익보호 및 개선을 위 한 구 청소년 노동인권보호단을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 ②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상담 및 신고할 수 있도록
<u><신 설></u>	

<u><신 설></u>	<u>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.</u> <u>제39조(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)</u> 구청장은 <u>청소년 노동인권</u>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사업장을 선정·홍보할 수 있다.
<u><신 설></u>	<u>제40조(사업의 지원)</u> 구청장은 <u>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</u>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
<u>제37조 ~ 제44조 (생 략)</u> <u><신 설></u> <u>제8장 청소년유해환경</u> <u>신고포상금</u> <u>제45조 ~ 제52조 (생 략)</u> <u><신 설></u>	<u>제41조 ~ 제48조 (현행 제37조부터 제44조까지와 같음)</u> <u>제8장</u> <u>청소년통행금지·제한구역 지정</u> <u>운영</u> <u><삭 제></u> <u>제49조 ~ 제56조 (현행 제45조부터 제52조까지와 같음)</u> <u>제9장 청소년유해환경</u> <u>신고포상금</u>